

「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장문혁의원의외 2인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관광객 유치지원, 관광사무 위탁, 관광보조사업 등 관광 진흥 전반에 대해 조례 명시 필요
- 이를 위하여 「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」를 「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

- 『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』를 『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』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

나.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3조)

다. 관광객 유치 지원(안 제4조)

- 관광객 유치 지원 사항을 나열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

라. 지원사항(안 제5조)

- (안 제4조)에 따른 지원범위 명시
- 마. 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(안 제3장)
- 관광안내소의 역할(안 제8조)
- 관광안내소의 운영(안 제9조)

바. 관광사업 보조금(안 제4장)

- 보조금 지급 해당 사업 명시(안 제10조)

사. 관광사무 위탁(안 제5장)

- 관광사무의 위탁 대상 명시(안 제11조)

아. 포상(안 제6장)

- 관광 진흥에 기여한 민간·단체 포상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3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관광객 유치지원, 관광사무 위탁, 관광보조사업 등 관광 진흥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과, 「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 등 평창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